

신청기관 :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영국 군사법제도 체계와 기능에 대하여⁰¹

조 의 행

서울신한대 교양학부 교수

모든 법제정보

영국 법제정보

I. 영국 군사법제도 개관⁰¹

오늘날 영국군의 근간이 되는 잉글랜드군은 역사적으로 치안관(High Constable)과 문장원(紋章院: Earl Marshal)에 의해 복무가 통제되었다. 1521년에는 초기 형태의 군 법정(Court of the Marshal)이 영국군에 도입되었다. 영국의 군사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는 영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화정을 이끌었던 호국경 크롬웰의 치세(1640~1658년)에 상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666년, 법무감실(the Office of Judge Advocate General)이 창설되어 군법정의 기소와 재판 등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이 세계제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법무감실의 역할과 기능 역시 영국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파견 및 원정군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법무감실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영국의 군사법체계는 20세기에 들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영국 육해공군은 각각 군법(the Army Act 1955, the Air Force Act 1955, 그리고 the Naval Discipline Act 1957)을 제정되어 각 군의 독립성을 강화했는데, 통합 군사작전이 요구되는 현대전장에서 각 군의 상이한 군법 및 복무규율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생겼다. 1661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해군 법무관실(the Office of Judge Advocate of the Fleet)은 오랜 기간 육군과 별도로 운영

⁰¹ 본 글은 영국 하원 외교 및 국방 분과(International Affairs and Defence section)에 제출된 보고서 -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n Introduction - 과 영국 법원(Courts and Tribunal Judiciary) 및 각 관련부서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간추려 작성했다.

되어 있어 두 기구의 업무 통합 필요성 또한 일찍부터 제기되어 온 상태였다. 유럽 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서 지적한 군사법권의 독립은 유럽 연합 국가인 영국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시대적 요구이기도 했다.⁰² 그 결과가 2006년에 [통합] 국군법(the Armed Forces Act 2006) 제정이었다.

국군법은 각각 별도로 존재했던 육해공군의 군법, 복무규정 및 군사법체계를 일원화 시켰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국군법을 통해 변화된 영국군의 군사법제도의 특징은 군사법체계의 구성과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것과 군인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은 국군법 이후 변화된 영국 군사법체계에 속해 있는 주요 기관, 기능 및 성격 등을 정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영국 군사법체계가 갖는 그 의의 또한 제시하겠다.

II. 영국의 군사법체계(the Service Justice System)의 법적근거와 범위

1. 법적 근거

영국군의 군사법체계는 2006년에 제정된 국군법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전 육해공 3군이 별도로 제정하였던 군복무법(the Service Discipline Acts)을 하나로 통합시켜 대체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영국군에 복무 중인 자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본 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은 군 형법 체계(the military disciplinary system)를 민간 형법 집행절차와 상당부분 유사하게 개혁되었다. 즉, 동일범죄에 대한 군형법과 일반형법의 괴리를 줄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군복무교범(the Manual of Service Law)⁰³은 국군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휘관(the Commanding Officer)의 역할과 권한, 조사권, 약식 재판 및 군사재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이 군복무교범에는 “당신이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권리(Your rights if you are accused)”라는 제목의 간단한 홍보책자(leaflet)도 포함되어 있다.

⁰² 기존 영국군 사법체계가 유럽 인권협약 제6조가 정한 독립·공정한 재판 원칙을 위반한다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Findley v. UK).

⁰³ 일반적으로는 이 용어보다는 Joint Service Publication (이하 JSP)로 불린다.

2. 군사법권의 범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군사법권(Jurisdiction)의 범위이다. 영국의 군사법체계는 오직 군복무교범 위반에 한해 적용된다. 헌병 및 민간경찰이 공조해야 할 사안 역시 발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이 발생할 장소, 위법의 성격, 그 복잡성, 그리고 누가 관여되었는가에 수사 및 사법권의 권한이 결정된다. 만약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헌병과 민간경찰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합의를 거친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⁰⁴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군인 및 군무원의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헌병이 담당한다.⁰⁵

III. 군사법원

1. 군사재판 지원실(Military Court Service: MCS)

군사재판 지원실(Military Court Service, MCS: 이하 지원실)은 군사법원, 약식항소법원 및 군민법원의 형사재판 업무를 지원하는데, 국군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육해공 3군이 별도로 운영되던 군법원은 지원실의 업무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원실은 법무관실 및 군 검찰국, 국방부, 보호감찰실(the National Probation Service), 피해자 및 각 군사법원 법무관 등과 밀접하게 협력한다.

군사재판 지원실장(Director of MSC)은 민간인으로 임명된다. 군의 지휘·명령 체계로부터 독립적인 군사재판 지원실은 본부(HQ)에 17명의 직원을 두는데 모두 일반 공무원 - 일부는 전역한 군 출신 - 이다. 지원실장은 군 형사소송 지원국장(the Head of the Armed Forces Criminal Legal Aid Authority)의 직속상관(the Line Manager)이다.⁰⁶

지원실 본부(이하 본부)는 다음과 같이 재판에 관여한다. 본부는 법무감에게 각 사건 법무관 선임을 요청한다. 일단 본부가 증인을 선임하고 배심원을 명시하면, 구체적인 재판

⁰⁴ 민군 수사 및 사법권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군 검찰국(SPA)의 홈페이지(<http://spa.independent.gov.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⁰⁵ 이외에 영국과 상대국가가 맺은 조약, 각서 혹은 군사지위에 관한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등에 의해 군사법권의 범위가 규정되기도 한다.
⁰⁶ 군 범죄 법률 지원국(the Armed Forces Criminal Legal Aid Authority)은 지원실의 하부조직으로 군 검찰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의 절차는 관련 군 법원 센터(Military Court Centre)로 이관되는데,⁰⁷ 이곳에서 법무 장교(Court Officer)는 모든 사건의 증인관리를 포함한 모든 사건의 일정을 하루 단위로 관리한다. 아울러 군사재판 지원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원 행정 장교(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r)에 의해 통지된 모든 재판절차의 협력, 관리 및 지원
- 법률에 의거 각 재판 관련 모든 인원 명시
- 재판 관련 상세한 통계, 예산 및 기록을 유지
- 군 사법 위원회(the Service Justice Board)와 군 사법 집행 그룹(Service Justice Executive Group)에 대한 업무 지원
- 군인, 국방부 및 대중들에게 군사법체계의 인식 및 신뢰도 향상 도모
- 군사법체계에 참여한 군인과 군속에게 군사법체계에 대한 교육

2. 군사법원(the Court Martial)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으로서, 국군법의 법률적 근거에 의한 상설 법원으로 재판에 대한 권한과 절차는 일반 법원과 유사하다. 군사법원은 심각한 일반형법과 군형법 - 특히 군복무규범 - 을 위반할 경우 군사재판에서 심리 및 판결한다. 비록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 지휘관에 의한 약식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인 법무관(Judge Advocate)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인정 절차를 밝힘과 동시에 재판을 수행한다.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동일한 판결권한을 갖는다. 2003년에 제정된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또한 군사재판 판결에 적용할 수 있다. 재판과정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3명에서 7명 사이의 장교(Commissioned Officers)와 준사관(Warrant Officers)으로 구성된다.⁰⁸ 이들은 재판장으로부터 해당 법률

⁰⁷ 상설 군 법원 센터(Military Court Centre)는 영국과 독일에 각각 5개소와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군사재판은 전적으로 군원 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열릴 수 있지만, 모든 군사재판 절차는 숙련된 군사재판 지원실과 군원 센터 인력에 의해 지원된다.

⁰⁸ 이들은 군 법원 서비스(the Military Court Service)에 의해 피고의 지휘계통에서 벗어난 간부들에 한해 선임된다. 한편 피고의 신분 에 따라 민간인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JSP 830의 Volume 2, chapter 23 참조.

에 대한 조언과 증거를 청취한 뒤, 피고의 유죄여부를 밝힐 책임을 진다. 배심원단은 간단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유/무죄를 결정한 후, 재판장과 함께 최종 판결한다.

3. 약식재판(Summary Hearings)

경미한 군복무규범 혹은 군형법 위반은 지휘관에 의해 약식재판으로 다루어진다. 군내 범죄의 대부분이 약식재판으로 다루어진다. 대부분의 군 관련 판결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약식재판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지휘관의 역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4. 약식항소법원(Summary Appeal Court)

약식재판의 결정에 불복한 피의자는 약식항소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재판관은 2명의 장교(officers)와 함께 이를 심사한다.

5. 군사재판 항소법원(Court Martial Appeal Court)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군사재판 항소 법원을 통해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받게 된다.

6. 군민(軍民)법원(Service Civilian Court)

군 조직에 소속된 민간인 혹은 해외 파견 군 가족에 의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군 민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사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으로 배심원이 구성되며, 재판장인 법무관(Judge Advocate)이 단독으로 판결하며 최대 12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IV. 조직 및 기능

1. 법무감(Judge of Advocate General: JAG)과 판사(Judiciary)

법무감은 대법관(the Lord Chancellor)의 추천과 여왕의 추인을 통해 임명되는데, 반드시 민간인이어야 한다. 법무감실은 법무감 외 부법무감(Vice-Judge Advocate General)과 6명의 법무감보(Assistant Judge Advocate General)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필요에 의해 예비판사(Deputy (part-time) Judge Advocates)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 군 범죄를 관할하는 판사 및 판사의 수장으로서 재판에 대한 감독
- 군 형사체계(the Service criminal justice system)의 모든 관계자에게 집행, 절차 및 개혁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군 형사체계의 모니터링 및 그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조언
- 군 사법 위원회(the Service Justice Board) 위원
- 영국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군사재판의 재판관 지정
- 약식상소법원(Summary Appeal Courts)과 민간상설법원(Standing Civilian Courts)에 대한 판사 임명과 구금 중인 자에 대한 수색 및 체포 영장 신청
- 심각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 - 이를테면 살인 - 재판의 재판장
- 예외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사안이 포함되는 군 항소법원(the Court Martial Appeal Court)의 회부
- 모든 재판 관련 기록의 6년 이상 보관

법무관은 모두 민간인으로 영국의 변호사(barrister or solicitor)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임명절차는 지방 혹은 순회 판사 임명과정과 동일하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재판을 수행할 때 이들은 재판정에서 “법무관(The Judge Advocate)”으로 공식적으로 호칭되지만, 재판정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사(Judge)로 불린다. 이들은 민간법원의 재판 역시 수행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 또한 군법회의의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관실(the Administrative staff in the Office)은 법무관의 모든 재판관련 과정을 조력한다.

2. 군 검찰국(the Service Prosecuting Authority: SPA)

기존 영국 육해공군에 별도로 존재하던 검찰기구가 하나로 통합하도록 한 국군법에 근거, 군 검찰국은 본법이 발효된 2009년 1월에 설립되었다. 기능은 민간 검찰청과 유사하며 헌병과 마찬가지로 군 지휘·명령계통(the Chain of Command)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특히 수장인 검찰국장은 기소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다. 군검찰의 독립성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 이유를 불문하고 - 피의자의 군법 위반이 약식재판으로 처리될 수 없으면, 그 사건은 군 검찰에 의해 군사법원(the Court Martial)에 회부된다. 군 검찰은 증거를 검토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를 검토할 때, 군 검찰은 영국 검찰 규정(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과 이 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시에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군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군 지휘계통을 점검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군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식재판으로 환송할 수 있다. 기소를 판단할 때, 군 검찰은 헌병으로부터 정보 또는 증거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 초기 헌병으로부터 자문도 받을 수 있다.⁰⁹

3. 헌병(Service Police)

영국의 육해공군은 각각 헌병을 운영하고 있으며,¹⁰ 헌병은 군의 지휘·명령계통(the Chain of Command)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각 군 헌병의 역할은 동일하며 군법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군복무중인 자 혹은 군무원이 군법 및 복무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헌병이 이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custody)을 담당한다.

09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포함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사재판은 민간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10 정식명칭은 육해공군 순으로, the Royal Military Police (for the Army), the Royal Navy Police와 the Royal Air Force Police이다.

11 한편 육군 헌병사령관(Provost Marshal)은 휘하 세 조직 - 치안 및 군 범죄 수사 - 특별 조사국(Special Investigation Branch) 업무를 포함 - 담당하는 헌병대, 유치 및 구류 등을 담당하는 교도대(the Provost Staff), 그리고 주요 핵 및 군사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대(the Military Guard Service)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지휘관(Commanding Officers)

서두에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지휘관은 연대급 부대를 이끄는 고급장교로서 군 형사 재판에 있어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정 군법 및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지휘관의 사법적인 역할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¹² 지휘관은 약식재판(Summary Hearing)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non-criminal) 위반 - 이를테면 음주나 약물로 인한 비행(非行: misconduct) 혹은 근무태만 등 - 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약식재판에서 지휘관은 피의자에게 최대 28일까지 구금(deten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¹³ 다만 피의자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1명의 법무관과 2명의 장교가 주관하는 약식항소법원(Summary Appeal Court: SAC)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지휘관의 약식재판 판결 이전, 군사재판(the Court Martial)을 선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군내 발생 사건은 지휘관의 재량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그 예외가 국군법 Schedule 2에 명시된 군법 위반으로 살인, 학살, 반역, 반란 및 심각한 성폭력 등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헌병에 의해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거가 제시되면 군 검찰국장(the Director of Service Prosecutions)에 의해 사건이 회부되어야만 한다. 또한 Schedule 2에 명시된 군법 위반은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되어야 한다.¹⁴ 한편 수감 중 사망사고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또한 군 검찰국장에게 회부된다.

V. 피의자 방어권과 범죄기록

1. 피의자 방어권

헌병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는 전화를 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및 법률적 지원을

¹² 지휘관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the Armed Force Act 2006의 Section 119와 120, 그 구체적인 권한은 the Manual of Service Law(JSP 830)의 volume 1, part 3(1-6-15~16)을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7556/20160906-Chapter_6-AL40.pdf (2018년 4월 3일 접속)

¹³ 상급당국(Higher Authority)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¹⁴ JSP 830, volume 1 chapter 6, para 23 (page 1-6-11)를 참조.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범죄목록은 JSP 830, volume 1, chapter 6, Annex D와 E를 참조.

받을, 즉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일반 시민이 민간 경찰에 체포·구금 되었을 때, “경찰 및 범죄 증거법: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에 의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 동일하다. 즉, 피의자는 민간 법정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은 군 형사소송 지원제도(the Armed Forces Legal Aid Scheme)에 의해 보장받는다.¹⁵

약식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지만 피의자는 재판 전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약식재판 대신 군사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 약식재판 때, 피의자는 비법률가인 장교(assistant officer)로부터 문서작업 절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군사법원과 약식항소법원에서 피의자는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다.¹⁶

2. 범죄기록

약식재판이나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이 기록은 경찰청의 컴퓨터에 범죄기록이 저장된다. 외국 혹은 영연방 출신으로 영국군에 복무중인 자의 범죄 기록 또한 저장된다. 영국의 내무부(Home Office)는 2014년 1월, 출입국관리소(the Border Agency)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및 영연방 군 및 군속 출신의 영구 추방 및 거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지침을 마련했다.

VI. 군 고충 처리절차(Armed Forces Complainants Service Process)

국군법의 제정으로 군 고충 처리절차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군 고충 감독관(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이하 감독관) 직책의 신설로서, 군인 및 그 가족이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 혹은 불만을 군이 적절하게 처리하여 그

¹⁵ 군 형사소송 지원국(the Armed Forces Legal Aid Authority)은 법률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군 검찰국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으며, 영국군 형사법체계를 통해 기소된 모든 피의자들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한다. JSP 838: Armed Forces Criminal Legal Aid Scheme 참조: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 (2018년 4월 7일 접속)

¹⁶ 영국 내에는 군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법무법인이 상당수 존재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군 고충 처리체계는 2015년, 군 고충 및 자금지원 관련 조항(Service Complaints and Financial Assistance)이 국군법에 추가되면서 신고절차가 일원화되어 그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감독관의 공식적인 명칭도 군 고충 옴부즈맨(the Service Complaints Ombudsman: 이하 옴부즈맨)으로 변경되었고 그 권한 역시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옴부즈맨은 하원 군사위원회(the Defence Council)를 대신해서 군 고충 처리가 정확하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이나 실책 등의 유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¹⁷

VII. 영국 군사법체계의 시사점

2006년 국군법 제정 이전까지 영국군에서는 재판과정 중 지휘관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 대내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로서 유럽 인권 협약 6조에 근거, 군사법체계를 국방부 및 군의 지휘·명령체계로부터 독립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물론 군 형사 재판의 대다수가 약식재판(Summary Hearings)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휘관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군사법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군사법제도 개혁 이후 법무감(관)과 군 검찰이 모두 군인이 아닌 민간 법조인으로 대체됨과 동시에 그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역시 보장받게 되었다. 둘째, 일반 법정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약식재판을 제외한 모든 군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사법집행 절차, 법률의 적용 및 집행 또한 가능한(as far as possible) 일반 법정의 그것과 차이를 좁혀 군사법체계의 투명성을 높였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군사법체계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군 고충 및 불만 관련 신고 체계의 개선과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민간출신의 책임자(군 고충 옴부즈맨)의 권한 강화가 보여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영국 정부의 군 개

¹⁷ 군 고충 처리 체계는 군 검찰국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군 고충 및 불만처리에 대한 절차와 옴부즈맨의 권한은 다음을 참조: <https://www.servicecomplaintsombudsman.org.uk/> (2018년 4월 7일 접속)

혁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군사법제도가 우리 군으로의 직접적인 이식 및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은 법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군내 인권 문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군사법체계는 우리 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Brooke-Holland, Louisa,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n introduction," SN06823, International Affairs and Defence section, (May, 4, 2014):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823/SN06823.pdf> (2018년 4월 1일 접속)
- Mwedzi, Prosper, "De-mystifying the British Military Justice System," Lancashire Law School, (November 13, 2014): <https://uclanlaw.co.uk/2014/11/13/de-mystifying-the-british-military-justice-system/> (2018년 3월 28일 접속)

〈공식 웹사이트〉

- "The armed forces legal aid scheme (JSP 838)," (December 14, 20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sp-838-the-armed-forces-legal-aid-scheme> (2018년 4월 5일)
- "Armed forces service complaints process," (September 17, 2017):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 (2018년 4월 7일 접속)
- "Commanding officers guide (manual of service law: JSP 830 volume 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oint-services-publication-jsp-830-manual-of-service-law-msl> (2017년 4월 5일 접속)
- "Service Complaints Ombudsman for the Armed Forces," <https://www.servicecomplaintsombudsman.org.uk/> (2018년 4월 7일 접속)
- "Service Prosecuting Authority," (December 12, 2012): <https://www.gov.uk/guidance/service-prosecuting-authority> (2018년 3월 28일 접속)
- "Service Prosecuting Authority (SPA)," : <http://spa.independent.gov.uk/index.htm> (2018년 4월 2일 접속)
- "The Military Court Service," (December 12, 2012) : <https://www.gov.uk/guidance/the-military-court-service> (2018년 3월 28일 접속)